



축산발전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(양계)

— 농림수산부 —

1. 측정과

가. 양축자금 지원

(1) 지원규모

가) 조달 및 운용규모

		'91(A)	'90(B)	증감(A-B)
조 달	재정자금 (신규지원)	400억원 (100)	300 (100)	100 (-)
	한은차입금	650	520	130
	축협자금	1,150	880	270
계		2,200	1,700	500

(2) 지원방향

가) 자금의 용도

○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, 동물약품 구입비 등 가축사양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여 단기지원

나) 융자조건

- 1) 융자대상 : 가축사육 여건을 갖춘 부업 또는 전업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부업양축가 우선 지원
○ 부업 및 전업양축가 규모

	한(육)우	젓 소	돼 지	닭
부 업	20두미만	10두미만	150두미만	3,000수미만
전 업	100두미만	50두미만	500두미만	15,000수미만

2) 융자기간

-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함.
○대출금 상환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, 1년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가능

3) 금리 및 이자징수

- 금리 : 연5%
○이자징수 : 대출금의 이자는 원금상환일에 후취

4) 채권보전

-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,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은 담보대출(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포함)로 함.

(다) 양축자금 융자

1) 대출 대상자의 추천

○대출 대상자는 축산계장이 양축가별 양축규모 및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대상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함.

○축산계가 조직되지 아니한 지역은 축협 대의원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별로 선출된 대의원이 상호 협의하여 추천함.

2) 가구당 지원액

○가구당 지원액은 4백만원 이내에서 지원

3) 대출 대상자 확정 및 공개

○대출 대상자는 축산계장 또는 대의원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축산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한 양축가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.

○융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공개하여야 함.

3) 대출금의 지급

○대출금은 출자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제하지 못하며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.

○대출금을 지원한 때에는 융자 대상자를 추천한 축산계장 또는 대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함.

(라) 양축자금의 생산자금화

○양축자금의 소비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으로 지급

○사채를 주고 있는 양축가 또는 자체조달이 가능한 양축가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외 또는 지원액을 조정하여 축산경영비 부족 양축가를 중점 지원토록 함.

(마) 특수목적 양축자금

○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가축사양비·시설복구비·자축구입비 등에 지원

나. 정착촌 구조개선사업

(1) 목적

○정착촌의 축산구조 개선사업 및 경영개선사업

지원으로 정착촌의 축산기반 확충과 축산소득증대 유도

(2) 기본방침

○정착촌의 공동숙원사업에 한하여 지원

○정착촌에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양축가에 대하여 축협조합원으로서의 가입을 유도하고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축협을 통하여 계통출하

(3) 사업계획

(가) 시설구조개선사업

○사업주체 : 시·도지사

○사업기간 : '91.1- '91.12

○축산진흥기금 지원계획

	물 량	단 가	금 액
계	32개소	백만원	4,000
○축산폐수처리시설	7	300	2,100
○축분건조시설	22	77	1,700
○중추사육시설	3	66	200

○지방비 확보

— 시도지사는 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를 확보하고 부족분은 자담토록 조치

(나) 경영개선사업

○사업주체 : 축협중앙회

○사업내용

— 정착농가의 축협조합원 가입유도
— 정착농장의 축산물 계통출하 지도
— 양축자금 활용 방안강구

○세부 추진계획

— 축협조합원 가입유도
· 정착농가의 축산실태 파악 및 조합원 가입 유도
· 조합이용도 제고 방안강구
— 축산물 계통출하사업지도

(3)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개발

(가) 축산경영진단사업

1) 목 적

○주요가축에 대한 경영관리 및 수익성 분석 등으로 경영지표 설정

○경영지표 예고에 의한 경영안정과 시장대응력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

○경영지표에 의한 경영개선으로 생산비 절감

2) 추진방향

○양축농가의 경영진단과 생산비 분석에 의한 농가경영개선 유도

○전업농가 중심의 경영 및 기술지도강화

○축종별 경영진단으로 대농민교육 및 지도계획 수립

○축산업 경영에 투입되는 제비용 등을 경영일지에 작성, 분석

3) 사업계획

○사업대상 : 한우, 젓소, 돼지, 닭(산란, 육계)

○사업기간 : '91. 1. 1-12. 31(1년간)

○사업비 : 140백만원(축산진흥기금)

○사업비 내역

사업명	사업량	사업비
경영일지제작배부	천부	백만원
경 영 진 단	100	50
계	9개도	90
	-	140

(나) 전업규모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모델 개발

1) 목 적

○축산경영규모 확대에 전업농가육성 및 축산공해 방지로 노동 및 시설이용도 제고

○전업규모 축사시설과 분뇨처리시설규모 설정으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편이제공

○시설 및 자재의 규격화로 시설비 절감

2) 추진방향

○우리나라 기후 및 축종별 생리조건에 적합한 표준모델 개발보급으로 양축농가가 직접 이용 가능하도록 규모 설정

○축종별 표준축사시설 결정으로 관리작업이 간편하고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방식 개선

○저렴하고 견고한 건축자재 이용으로 농가에서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공법 개발

3) 사업계획

○사업주체 : 축협중앙회장

○대 상 : 젓소, 돼지, 닭(산란, 육계)

○사업기간 : '91. 1. 1-12. 31(1년간)

○사업비 : 200백만원(축산진흥기금사업)

4) 세부추진계획

추진내용	주관								
<p>1) 전업규모 설정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젓 소</th> <th>돼 지</th> <th>육 계</th> <th>산란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0~40두 (착우유)</td> <td>500~ 1,000두</td> <td>2~3만수</td> <td>2~3만수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젓 소	돼 지	육 계	산란계	30~40두 (착우유)	500~ 1,000두	2~3만수	2~3만수	축협중앙회
젓 소	돼 지	육 계	산란계						
30~40두 (착우유)	500~ 1,000두	2~3만수	2~3만수						
<p>2) 추진방법</p> <p>○축협중앙회장은 전업규모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모델개발협의회 구성·운영</p> <p>-협의회는 축산·건설·환경관계 전문 연구기관·학계·민간기술자 및 전업규모 시범 농가 등으로 구성</p> <p>-축협중앙회장은 민간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참여폭을 확대코자 축사 및 분뇨처리 시설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협의회로 하여금 검토</p> <p>-협의회에서는 축종별 근대화된 외국의 시설을 조사·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시설규격·규모·시공방법 등을 검토결정</p>									

(다) 축산(돼지, 닭) 계열화생산사업

1) 목 적

○계열화생산에 의해 양축농가는 일정소득 보장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

○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생산 및 유통단계축소로 인한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

○계열화 사업자에 의한 홍보강화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소비확대로 유통구조 개선

2) 추진방향

○계열화 사업자는 계열화 생산사업에 필요한 종돈장·종계장·도축장(도계장)·가공공장·부화장 등을 확보한 완전계열화사업으로 육성

○계열화 사업자는 계열농가에 생산요소(자축·사료·약품 등) 및 사양기술 제공

○계열화 사업자는 생산된 가축을 전량 책임수매하여 직접 처리·가공후 판매

○계열화 사업자와 농가의 계약에 의한 생산사업으로 추진

3) 사업계획

○사업주체 : 농림수산부

○대 상 : 돼지, 닭, 계열화생산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

○사업기간 : '91- '92(2년간)

○사업비 : 15,000백만원

○지원내용

사업량	단 가	소 요 금 액		
		용 자	자 담	계
개소 6 (1개소당)	백만원 2,500	15,000 (2,500) (50%)	15,000 (2,500) (50%)	30,000 (5,000) (100%)

4) 세부실시요령

추진내용	주관
<p>1) 지원대상자 선정 : 농림수산부장관</p> <p>2) 계열화생산사업자 지정기준</p> <p>○일반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생산사업자 지정신청일 6개월전부터 계열화생산사업자 규모기준의 20%이상 실적이 있어야 함.</p> <p>○계열화생산사업자 지정 신청서류</p> <p>-사업계획서(계약서, 농가지도, 생산물처리방법, 투자계획서등)</p> <p>-도지사의 계열화생산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및 종합 검토의견서</p> <p>-원자재공급 및 생산물판매계획서</p> <p>3) 계열화생산사업지원대상자선정</p> <p>○양계, 양돈조합과 수출업체, 육가공 및 처리업체, 사료업체, 축산업체 등 계열화생산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일정지역 단위로 계열농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도지사에 신청.</p> <p>○시도지사는 계열농가 선정, 지역, 계열주체의 시설규모, 원자재공급 및 생산판매계획 등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.</p> <p>○농림수산부장관은 '92년까지 완전 계열화 생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축산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.</p> <p>○'85년이후 당부로부터 계열화생산사업지원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.</p> <p>4) 계열화생산사업자 규모</p> <p>○돼 지 — 총사육두수 : 30천두이상</p>	<p>농림수산부 시·도지사</p>

- 계열농가수 : 30-60호
- 농가당사육규모 : 모돈50-100두
- 육 계 — 총사육수수 : 1,500천수이상
- 계열농가수 : 50-80호
- 농가당사육규모 : 20-30천수

5) 지원자금의 용도

- 지원자금의 종돈장, 종계장, 부화장 및 자축(자돈, 병아리등)과 사료비 등 원자재 공급에 사용하여야 함.
- 단,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, 가공, 판매시설비에도 사용할 수 있음.
-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계열화 생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는 축산물처리, 가공시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음.
- 계열화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시설인 돼지의 경우 종돈장, 도축장, 가공공장과 닭의 경우 종계장, 부화장, 도계장, 가공공장은 '92년말까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.

6) 용자대상자 :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한 계열화 생산사업자

7) 용자조건

- 용자한도 : 사업자당 2,500백만원이내
- 용자비율 : 소요자금의 50%이내
- 용자취급기관 : 축협중앙회

8) 여신관리 및 채권보전

- 지원대상 계열화생산사업자의 소요자금 10% 범위내에서 사업착수금으로 우선 용자조치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자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해 사후관리

9) 사업추진사항지도

- 계열화생산사업자는 완전계열화생산사업을 원칙으로 하여 자축, 사료 등 생산요소공급에서 판매 및 농가지도까지 전담으로 일관생산체계 유지
- 시·도지사는 계열농가와 계약, 시설확보, 생산물의 생산과 판매, 농가지도, 상·하한 가격 설정 및 책임수매등을 지도하고 사업 부진시는 지원자금회수조치
- 돼지, 닭 생산물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시장출하를 중지하고 자체 비축을 실시함과 동시에 농가입식도 자제
- 기존 계열화생산사업자도 '91년말까지 완전 계열화 생산이 가능하도록 준비
- '91년말까지 미확보시 정부의 계열화생산사업자 지정에서 제외

(라) 축사시설 개선사업

1) 목적

- 축사시설자동화에 의한 생산비절감 및 국제경쟁력 제고
-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인력대체 추진
- 축사환경개선에 의한 위생적인 축산물생산·공급

2) 추진방향

-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사시설 개선 및 자동화시설 설치
- 기존부업규모 양축농가를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규모로 확대

3) 사업계획

- 사업주체 : 농림수산부

- 사업대상 : 소 50두, 돼지 2천두, 닭·오리 3만 수 이하 사육농가
- 사업기간 : '91.1. ~12(1년간)
- 사업비 : 64,500백만원
- 지원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재원별	사업량	소요금액		
		용자	자담	계
농어촌발전기금	개소 280	8,385	3,655	12,040
축산진흥기금	1,220	36,600	15,800	52,460
계	1,500	44,985 (70%)	19,515 (30%)	64,500 (100%)

4) 세부실시요령

추진내용	주관(협조)
① 지원대상자 선정 : 도지사 ② 대상자 선정기준 ○ 소 50두, 돼지 2천두, 닭·오리 3만 수 이하를 사육하는 농가중 축사시설의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 ○ 축산계열화 생산사업에 참여중인 농가 및 수출용 축산물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양축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 ○ 도지사는 사업비 한도액 내에서 축종별 소요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음 ○ 도지사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양축규모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축사시설, 규격, 기종 등을 검토하여 농가지도 ③ 대상자 선정절차 ○ 도지사는 시설개선 희망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후 농림수산부에 보고 ○ 농림수산부장관은 도지사가 선정할 지원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금액을 확정하여 축협중앙회에 통보 ○ 축협중앙회장은 농림수산부장관이	농림수산부 도지사 축협중앙회장

확정한 도별 사업비를 배정

④ 자금의 용도

- 자동급이·급수시설·집란시설 및 착유시설
- 환기시설
- 분뇨수거 및 처리시설
- 축사신축 및 기존시설의 개축·증축 등

⑤ 용자대상자 : 도지사가 선정한 축사 시설지원 대상자

⑥ 용자조건 :

- 용자한도 : 사업자당 3천만원 이내
- 용자비율 : 소요자금의 70% 이내
- 용자취급기관 : 축협중앙회

⑦ 여신관리 및 채권보전

○ 도지사가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 소요자금의 10%범위 내에서 사업착수금으로 우선 용자 조치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용자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해 사후관리

(마) 축산단지조성사업

1) 목적

-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구조개선
-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업축산농가시범육성
- 사양관리 공동체제 구축으로 규격품 축산물 생산 및 경영합리화

2) 추진방향

- 부업규모 축산을 전업규모로 확대하여 정착축산농가로 육성
- 축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공동설치운영으로 시범축산단지조성
- 사양기술 전달 및 공동정보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경영기반 확립

3) 사업계획

- 사업주체 : 도지사
- 대상 : 돼지, 닭 등 양축농가 중에서 시범단지 조성입주를 희망하는 농가
- 사업기간 : '91- '92(2년간)
- 사업비 : 6,000백만원

○지원내역

사업량	단 가	사업비	소 요 금 액			
			촉진기금용자	지방비	자 담	계
3개소	2,000백만원	6,000	4,200 (70%)	300 (5%)	1,500 (25%)	6,000 (100%)

4) 세부추진요령

추진내용	주관(협조)
<p>1) 지원대상자선정 : 도지사</p> <p>2) 대상자 선정기준</p> <p>○단지규모</p> <p>-단지당 10~20농가를 기준으로 하여 돼지는 1만두, 닭은 30만수로 하여 총사업비 20억규모</p> <p>○농가규모</p> <p>-돼지 : 농가당 모든 50~100두 사육규모</p> <p>-닭(산란계, 육계) : 농가당 2~3만수 사육규모</p> <p>○지원내용</p> <p>-농가당 축사 및 부대시설과 용수 등 개발비에 대한 총사업비를 1억원(모든 50두 규모시 1억원, 모든 100두 규모시 2억원)을 기준하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지방비 5% -촉진기금용자 70% -자담 25% 비율로 지원 <p>3) 선정절차</p> <p>○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축종별 사업대상자와 입주대상자 선정 등 단지규모를 확정하고 기반시설비지원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한 후 세부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91.3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제출</p> <p>-도지사는 단지당 사업비의 5%이상 지방비를 확보지원</p> <p>○농림수산부장관은 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축협중앙회에 통보</p> <p>○축협중앙회장은 지원대상자에 지원자금 배정</p> <p>4) 용자조건</p> <p>○용자한도 : 농가당 소요금액의 70%</p>	<p>도지사</p>

이내

○용자기관 : 축협중앙회

○기타 사항은 용자취급기관의 여신판계 제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해 사후관리

5) 사업추진사항지도

○해당 도지사는 전업축산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

-사업의 타당성 조사·분석·대상지 선정·입주 대상농가 선발 및 농가별 배치 등에 대하여 직접 지도 또는 자문

○기타 세부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 책임하에 추진하고 생산물에 대한 판로확보와 기술지도 전담

-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

-도지사는 축사 신축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

(바) 축종별 전문경영자교육

1) 목 적

○경영 및 시설개선에 의한 생산성 제고

○사양관리 기술향상으로 생산비 절감

2) 추진방향

○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실시

○한우·젓소·양돈 및 양계분야

3) 추진요령

○생산자단체별 연간 사업계획 수립실시(단체별 연2회 이상 실시)

○각종 세미나, 선진지 견학, 우수사례발표 등으로 효과거양

○교육에 따른 비용은 단체 또는 참가자 부담

○돼지비육돈 후기사료 및 육계후기사료 급여 지도(돼지, 닭)

○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검사대상 약물투여시 휴약기간 경과후 출하지도

나. 가축개량

(1) 닭능력검정사업

(가) 목적

- 중계자질개량 및 능력향상
- 우량종계 도입유도 및 양계농가에 계종선택지표 제공
- 양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

(나) 기본방침

- 검정요원의 전문화
- 검정방법의 공정화
- 검정결과의 공표

(다) 사업계획

- 검정소 검정 : 18천수(산란6, 육용12)
- 일반검정 : 도입 및 국내분양 종계

(라) 세부실시요령

내 용	주관(협조)
○검정요령 - 닭 능력검정요령(농림수산부 고시 제87-42호, 87.8.21)에 의함. ○닭 검정위원회 운영 - 검정란의 선발 및 배치 - 검정기록의 분석평가 - 검정지도 및 개선방안 도출 ○검정성적 공표 등 - 신계종을 수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거 수입여부 결정 - 검정소 검정결과는 축산관계 전문지 등에 공표 - 일반검정결과는 신청자 및 시도(시군)에 통보하여 종계관리에 협조 ○보고 등 - '91 닭 능력검정 세부계획보고(91.2월말까지) - 검정소 검정결과보고(완료후 10일 이내) - 일반검정결과(매월 15일까지) ○기타 - 대한양계협회장은 각종보고서 관련 도지사에게도 보고 - 도지사는 연2회이상 관련사업 현지 확인 점검	양계협회

3. 축산물유통과

가.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

(1) 주요축산물 가격안정대 운영

- 생산자단체, 수출육가공장을 통한 자율비축기능강화
 - 돼지고기 : 수출잔여육처리자금지원
 - 닭고기, 계란 : 축협조합(업종조합), 계열업체에 비축자금 지원(닭고기, 계란 수급조절사업 참조)
-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기능강화
 - 홍보주체 : 축협중앙회, 양돈협회, 양계협회
 - 홍보내용 : 수급 및 가격 동향, 축협의 관측결과 등
 - 홍보방법 : 협의회, 언론매체 활용, 홍보물제작 배포 등

나. 닭고기, 계란 수급조절사업

(가) 기본방침

- 자율적인 생산조절기반구축
- 민간주도의 수급조절

(나) 사업계획

- 사업주체 : 시·도
- 대상 : 생산자 단체(축협, 조합) 및 계열화 사업주체
- 사업기간 : '91
- 사업비 및 지원내역

	단 가	사업비	용자(축진기금)	자담	합계
양계산물수급조절					
- 육 계	1,400원/수	1,800천수	2,520백만원	-	2,520
- 계란	45원/개	116.5백만개	741 ♀	-	741
계			3,261 ♀	-	3,261

- 용자기간 : 1년
- 금리 : 8%(조합은 3%)

(다) 세부실시요령

추진내용	주관(협조)
① 사업대상자 ○육계 : 양계조합, 계열업체 ○계란 : 양계조합, 계열업체, 가공업체	시·도 축협중앙회
② 사업대상자 선정 ○시·도지사가 91. 3월말까지 추천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선정 ○시·도지사가 사업대상자 추천시 사업계획서 첨부 ○계열화사업체는 농가와의 계약서와 계열농가명단 등이 포함된 계열화사업계획서를 첨부하고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. - 육 계 : 1회전 입식물량이 50만수 이상일것. -산란계 : 실 사육수수 50만수 이상 ○선정된 사업자는 자율비축을 하되 수급상 필요시 당부 지시에 의거 의무비축 ○자금관리 : 축협중앙회	

○생산농가의 공동출하에 의한 시장 교섭능력 제고

- 상인들의 횡포 방지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
- 비축사업 병행추진으로 수급조절 기능강화

(다) 사업계획

- 사업주체 : 시·도 및 축협중앙회
- 대상 : 축협조합(양계조합) 및 산란계 계열화 시행업체
 -산란계 계열화 업체는 상시 사육수수가 50만이 상으로 기존의 사육농가와 계약을 해야 함.
- 사업기간 : '91. 1~12
- 사업규모 및 시설내역(개소당)

부지구입	건물	차량	선별기
500평	200	3대	2대
110백만원	160	30〃	200〃

* 부지 및 시설규모 등 세부사업계획은 사업자 형편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음.

○사업비 지원 내역

사업량	단 가	사업비	내역	
			용 자	자 담
2개소	500백만원	1,000백만원 (100)	700 (70)	300 (30)

다. 유통시설 확충

(1) 계란집하장설치

(가) 목적

- 계란의 유통구조개선으로 농가의 소득증대
- 계란의 수급조절에 의한 가격안정도모
- 계란의 상품성 제고로 소비확대에 기여

(나) 기본계획

-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계란의 등급별 포장화로 상품성 제고

- 재원 : 농발기금
- 지원구분 : 용자 70%, 자담 30%
- 용자조건
- 용자기간 : 3년 거치, 7년 균분상환
- 금리 : 연 8%

(라) 세부추진요령

- 계열화 생산업체는 시·도지사가 선정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
- 축협조합은 축협중앙회장이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추천
- 사업대상자 추천시 첨부서류
- 사업계획서 및 연차별 수지계산서(용자금 상환

시까지)

-계열화사업업체는 농가와의 표준 계약서와 계열농가 명단 등 포함된 사업계획서

○자금집행

-채권보전: 축협여신규정에 의함

-용자취급기관: 축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

-용자 종결기한: 92. 3. 31까지

○보고

-대상자 추천보고: 91. 3. 31 일함

-월별사업추진 실적보고: 매익월 10일까지

-사업완료보고: 완료후 10일 이내

(2) 축산물종합판매장설치

(가) 목 적

○축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 축산물가격 안정도모

○생산자단체가 소비지시장개입으로 공정거래형성

○양축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

(나) 기본방침

○축산물종합판매장을 연차적으로 확대설치

○산지와 대도시 소비지를 직접 연계하여 유통단계 축소

(다) 사업계획

○사업주체: 축협중앙회

-협조: 시·도지사

○사업대상: 지역축협(업종 조합을 포함하되 비회원조합도 포함)

○사업기간: 91. 1~12월

○사업규모 및 내역

사업량	개 소 당 규 모		
	판매장임대	냉동·냉장	차량
20개소	100평	10평	1대

○지원계획

-총투자계획

단위: 백만원

세부사업명	사업량	단 가	용 자	자 담	계
임대료	20개소	400,000천원	4,000	4,000	8,000
냉동·냉장시설	20 ♯	30,000 ♯	300	300	600
냉동차	20 대	30,000 ♯	300	300	600
시설 등	20개소	40,000 ♯	400	400	800
계		500,000	5,000(50%)	5,000(50%)	10,000(100%)

-개소당 사업비내역

(단위: 백만원)

계	임대료(구입)	냉동·냉장	냉동차	판매시설
500	400	30	30	40

-재원: 축진기금

-지원구분: 용자 50%, 자담 50%

-용자조건

•용자기간: 5년 거치, 5년 균분상환

•금리: 연 3%

4. 가축위생과

가. 축산물 위생

기본 방침

○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

○축산물 검사원 교육

○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강화

○위생 도계육 유통 정착

○원유 위생관리 강화

○축산폐수 처리사업 추진

○축산폐수 처리 연구 용역

○물먹인 쇠고기의 신속 검사법 개발 연구

○축산물 위생용기 유통관리 철저

○국비 축산물 검사원 업무 지원

(1)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사업

(가)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

1) 목 적

○국내산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내 축산업발전 및 공중보건향상도모

○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생산기반 정착도모로 양축농가 소득보호

—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유해잔류물질방지대책 강구:추진

○국내산 육류의 국제공인력 및 품질경쟁력 제고

—돼지고기 수출촉진 및 수입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

2) 추진방향

○축산물(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)내 항생제, 합성항균제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 실시

○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장비 및 재료비 지원 등 검사체제 구축

○잔류검사결과 동 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불합격 발생시 해당가축 출하농장 추적·검사

—가축 사양관리 실태점검 및 잔류원인 분석을 통한 양축농가 계도 및 특별관리

3) 추진계획

○검사대상

—대상품목: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

—대상물질: 항생물질, 합성항균제 등 유해잔류물질

* 검사 대상물질은 국내외 여건에 따라 필요시 선택중점 실시계획

○사업량: 45,000건

○검사방법

—축산물 작업장(도축장, 도계장)에서 도축되는 수축의 근육 등 시료채취후 “수축중 잔류물질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”에 의거 유해잔류물질 검사 실시

○실시기관: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(서울시는 보

건환경연구원)

○사업기간: 91.1~12월

○검사결과 조치

—잔류검사결과 불합격시 해당가축출하농장 특별관리 및 폐기 등 제재조치

1차: 해당농장의 가축사양관리실태점검 및 잔류원인분석을 통한 계도실시

2차: 해당농장 출하가축에 대한 검사실시 강화→ 검사 완료시까지 출고보류 등 유통 제한(불합격시 폐기 등 제재조치)

—잔류검사 결과를 분석, 유해잔류물질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자료로 활용

○사업비

사업명	사업비	사업비		
		국비	지방비	계
유해잔류물질검사	45,000건	45,000천원	45,000	90,000
- 검사재료비		(50%)	(50%)	(100%)

(라) 세부실시요령

내 용	주관(협조)
○유해잔류물질검사 세부계획 수립	시·도 (가축위생시험소)
—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장비 등 검사능력 및 월별, 축종별 도축두수 등을 감안 실시계획 수립	
항생물질: 사업물량의 전량 검사	
합성항균제 등: 사업물량의 10% 범위 이내	
※ 중급속, 홀문제, 농약의 검사계획은 추후시달 예정	
—시·도지사는 세부계획 수립후 91.1.20일까지 당부에 보고	
○잔류물질검사 실시	가축위생시험소 (가축위생연구소)
—검사시료 채취	
• 시료채취 장소: 축산물 작업장(도축장 및 도계장)	
• 시료채취 방법: 농장 추적 가능	

시료 무작위 채취

• 시료채취 물량 : 검사에 필요한 최소 물량(정밀검사 의뢰시 필요한 시료량 포함)

※ 시료 채취시 시료 고유번호 부여, 출하농장 주소 및 성명, 축종, 성별, 연령, 채취장소, 도축검사 신청인 등 기재 : 잔류검사 대장 작성, 관리

- 검사방법

[항생물질]

1차 : 가축위생시험소 실시

2차 : 가축위생시험소 및 가축위생 연구소 실시

※ 1차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출하농장의 수육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의 검사완료시까지 출고 보류

○합격→출고

○불합격→가축위생연구소에 정밀 검사 의뢰(합격→출고, 불합격→폐기처분)

[합성항균제]

1차 및 2차 : 가축위생시험소에서 HPLC 등 정밀검사장비 활용 실시

※ 1차 불합격 판정을 받은 출하농장에 대하여는 2차 검사완료시까지 출고 보류(합격→출고, 불합격→폐기처분)

- 시료 채취 내역

• 시료량 : 근육 등 100g 이상

• 시료별로 고유번호, 축종, 성별, 연령, 채취장소, 출하농장 주소 및 성명 등 표시

※ 기타 사항은 '90사업계획서(위생 27464-74. 90.1.23) 참조

○검사결과 조치

- 검사결과 불합격 발생시 시·도지사에게 보고 및 해당가축 출하농장 특별관리 실시 : 대장 작성관리

• 가축사양관리 실태점검 및 잔류원인 분석 등을 통한 농가제도 실시

• 도축검사시 당해농장 출하가축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강화 : 도축전 특별관리 대상여부확인

→ 잔류물질검사 완료시까지 출고 보류 등 유통 제한(검사방법 참조)

* 검사강화 결과 2회 연속 불합격 미발생시 특별관리 해제

- 시·도지사는 잔류물질 검사결과 불합격 내역 및 특별관리대상 농장에 대한 검사강화 결과를 타 시·도에 통보

• 특히 불합격 해당가축 출하농장이 타 시·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해당 시·도에서 해당 농장 계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.

타 시·도로부터 불합격 해당가축 출하농장에 대한 내역 등이 통보될 경우에는 당해농장에 대한 특별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.

(2)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강화

(가) 목적

- 1) 축산물의 위생처리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
- 2) 작업장의 위생처리시설 확충으로 축산물수급원활 및 환경위생 기여

(3) 위생도교육 유통정착

(가) 목적

○도계장시설 근대화로 위생도교육 공급 및 교육 유통구조 개선

○도계처리시설(냉장냉동시설) 확충으로 교육 수급원활

○도계장 운영의 합리화로 농가의 육계출하 및 도계육 반출 등 산지, 소비지 유통질서 확립

(나) 기본방침

1) 위생도교육 유통지역 확대지정

- 닭,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대상 지역 지정 및 작업장 설치규정(농림수산부 고시 제 90-10호, '90.3.12)에 의거 유통지역 확대

2) 도계육 반출 및 유통질서 확립

○특급 도계장에 한하여 타시도 냉장(동)반출 허

용

- 식육운반차량으로 도계육 운송
- 반출시 반출통보서 및 검사증명서 발급 철저
- 도살·해체 수수료 부정 징수 및 탈세행위 지도 감독 철저

3) 영세 및 노후한 도계장의 통폐합 정비 유도

○도계장 신규 설치 허가시 농림수산부와 사전 협의

4) 도계장 경영 및 도계육 유통개선을 위한 자금지원

(다) 자금지원계획

1) 지원대상

○도계시설(가공, 비축시설 포함)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계장 경영자

2) 대상자 선정 및 관리

○시·도지사의 추천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

○자금 관리 :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

3) 사업기간 : '91.3~'91.12

4) 사업비 : 2,500백만원(축산진흥기금, 융자)

5) 지원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물량	단가	사업비	재원별			융자비율
				계	축진기금	자담	
도계장시설 근대화	개소 5	500	2,500	2,500	2,500	2,500	50%

6) 융자 조건 : 3년 거치, 2년 균분 상환(연리 8%)

(4) 축산폐수처리사업추진

(가) 목적

-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방지
- 양축농가의 정화시설비 지원으로 축산의육고취

(나) 기본방침

○법적규제 이하 농가 간이정화시설(간이저장조, 킷합발효돈사, 건조장 등)자금 융자

○폐기물관리법 규제 대상농가 정화시설(저장액비화, 킷합발효돈사, 건조장 등)자금 융자

○지역축협 등 축산단체에 분뇨운반장비 구입비 보조

○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(계분비료공장, 축분발효시설)시범 지원

○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

(다) 사업계획

1) 사업주체 및 대상

사업명	사업주체	사업대상	사업기간
○간이정화시설설치	시·군	법적규제이하 영세양축농가	91.1~12월
-간이저장조		-소 : 20두 이상	
-킷합발효돈사		-돼지 50두 이상	
-건조장(퇴비사)		-닭 : 5,000~10,000수	
○정화시설 설치	시·군	폐기물관리법 규제대상 농가	
-저장액비화 시설 등			
-킷합발효돈사			
-건조장(퇴비사)			
○분뇨운반장비 구입	시·군 지역축협	-지역축협(업종조합포함) -낙농, 육우, 양돈, 양계 단체	
○공동처리 시설	시·군	-시·군	
-계분 비료공장	지역축협	-지역축협(업종조합포함)	
-축분 발효시설		-낙농, 육우, 양돈, 양계 단체	

2) 사업비 : 31,950백만원(축산진흥기금)

3) 지원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량	단가	합계
간이저장조 등	개소 11,500	3	34,500
정화시설	1,000	10	10,000
분뇨운반장비	50	30	1,500
계분비료공장	3	1,000	3,000
축분발효시설	3	1,000	3,000
계			52,000
축진기금			
소계	융자	보조	지방비
20,700	20,700	-	6,900
			자담
			6,900

6,000	6,000	-	-	4,000
1,050	-	1,050	-	450
2,100	600	1,500	-	900
2,100	600	1,500	-	900
31,950	27,900	4,050	6,900	13,150

4) 용자 및 보조 조건

사업명	금리	용자기간		
		계	거치	상환
간이저장조 등 정화시설	연 3% 7	10년 8	3 3	7 5
분뇨운반장비 계분비료공장 축분발효시설	- 연 3% 〃	- 10 10	- 7 7	- 7 7
개소당 자금한정		보조비율		
용자	보조			
3백만원	-	-		
10 〃	-	-		
-	21백만원	70%		
200백만원	5억원	50%		
〃	5억원	50%		

※ 시·도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설치하는 공동처리 시설의 경우는 보조금만 지원

(5) 가축방역사업

<목적>

○가축전염병의 발생·전파·만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

○인수공통전염병·기생충병·식중독 등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

○가축의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

<추진방향>

○만성·경제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절정책 추진
-가축전염병의 혈청검사 및 검진·도태사업 확대

○국가방역체제에서 자율방역체제로 점차 유도
-양계협회에 자체검사실 설치 및 계군혈청검사 사업실시

○가축위생시험소의 기능활성화 방안 추진
-연차별 시도시험소 증설 및 기술인력 양성과

정밀검사장비 확보

○축산물위생검사와 가축방역사업의 연계추진

-도축장 출하가축의 혈청검사에 의한 가축질병에 대한 추적 조사와 양성축 출하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로 도축장 검사제도 정착

○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찰업무강화로 선진방역 대책강구

○가축전염병 예방약 개발보급 및 품질향상으로 가축방역 효과 거양

-동물약품 제조업의 시설기준 강화 및 자가검정 제도 정착

<주요사업 추진내용>

○양계협회에서 계군혈청검사사업실시를 위한 자체실험실 설치 운영

(사업비 2억원, 50% 지원)

-종계장(220개소)에 대하여 주요 닭전염병 6종 2만수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

-가축위생연구소의 기술협조 및 검사결과에 의한 자율방역대책 추진

나. 가축방역

(1) 가축혈청검사사업

(가) 목적 및 필요성

○가축전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한 방역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가축의 혈청을 검사하여 면역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, 조기검색 및 질병발생동향을 파악하고

○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적기 실시지도 및 질병방제와 예방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적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진방역을 지원하기 위함.

(나) 사업시행기관

○가축위생연구소 : 진단액 등 생산공급 및 기술지도

○가축위생시험소 : 혈청검사 실시 및 결과통보와 양축농가지도

(다) 검사대상질병 : 12종

○닭 : 뉴캐슬병 · 산란저하증 · 감보로병 · 전염성 기관지염 · 추백리 · 마이코플라즈마병(6종)

○돼지 : 돼지콜레라 · 단독 · 위축성비염(3종)

○소 : 쌍구흡충증 · 라임병(2종)

(라) 실시방법

1) 닭혈청검사

○검사대상선정

-종계장이나 육계농장에서 직접 채혈¹ 또는 이곳으로부터 도계장에 출하된 닭을 선정 채혈하되 1개 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.

-가능한한 오일백신 접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닭을 선정하되 접종일이 1년이상 경과된 닭으로서 백신제조회사(수입품 포함) 제품별, 접종일자별로 구분하여 검사함으로써 면역역가의 지속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.

○가검물채취 : 매분기별 균분실시하되, 관내양계농가에서 검사요청시 진단액 부족으로 인한 검사거부사업이 없도록 할 것.

(2) 계군혈청검사사업지원

(가) 목적 및 필요성

○닭 전염병에 대한 혈청검사로 면역항체가와 질병감염여부, 질병발생동향 등을 파악하여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양계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역토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예방

(나) 사업수행기관

○대한양계협회

-기술지도기관 : 가축위생연구소

(다) 사업기간 : '91. 4~12월

(라) 검사대상

○등록된 종계장(220개소)에서 사육하고 있는 종계

(마) 대상질병 : 6종

○추백리 · 마이코플라즈마병 · 뉴캐슬병 · 산란저하증 · 닭전염성기관지염 · 전염병 F 낭염

(바) 사업량 : 20,000수

(연검사건수 : 120,000건)

(사) 사업비 : 200,000천원

(국고보조 : 100,000천원, 자부담 : 100,000천원)

(아) 실시요령

○대한양계협회는 가축위생연구소에 항원을 제조 의뢰하여 공급받아 사용할 것

○종계장 사육계를 4개군으로 구분하여 1군당 10수를 채혈하여 검사하고, 연 2회 이상 실시할 것

○협회는 혈청검사성적을 분석하여 면역역가, 질병감염여부, 백신접종적기여부, 접종방법의 개선 등 방역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해당 종계장에 통보

○협회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전 보고하고 매분기별 사업결과를 익월 10일 이내에 보고할 것

○가축위생연구소는 동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는 물론,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할 것

다. 동물검역

(1) 동물 및 축산물검역강화

(가) 목적

○동물 및 축산물 교역증대에 대비,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로 국내 축산업 보호

○수입축산물의 위생검사(잔류물질 등)강화로 국민보건향상 기여

(나) 기본방침

○수입개방화 추세 및 교역상대국 다변화에 따른 검역기능 강화 및 제도 개선

○수출검역시 상대국 위생조건 및 국제규정 이행으로 수출증대 및 국제공신력 제고